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전국 규모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로는 처음이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 한국어판(K-CIDI, Korean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31.4%로서 남자 38.7%, 여자 23.9%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많음. 주요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유병률이 16.3%, 주요 우울증 등 기분장애는 4.8%, 불안장애는 9.1%,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적 장애는 1.1%로 나타났음.
- 또한 평생유병률이 결혼상태(29.8%)인 집단보다 별거·이혼·사별한 집단(41.6%)에 서 높았고, 도시지역(30.5%)에 비하여 농촌지역(34.0%)에서 더 높았음을 나타냈으며, 나이별로는 40대(33.8%)에서 가장 높았음.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정신질환에 이환된 모든 환자의 8.7%만이 지난 일년간 의 사, 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 건강보험 월 5만 9천원 내고, 6만 9천원 받아가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총 11조 3222억원인 반면, 병원진료비 등으로 지출한 보험급여비가 13조 1575억원이었음. 이로써 순수지(純收支: 보험료 대 급여비) 적자 규모는 1조 8353억원이 발생하였음.
- 가입자(세대)당 월보험료(사업주부담 및 국고지원 포함)는 평균 59,397원인 반면, 보험급여비는 16% 많은 69,025원이었음. 보험종별로는 직장보험이 월 57,654원씩 납부한 반면, 급여비로 31%가 많은 75,619원씩 지급받아 보험재정의 어려움이 더했으며, 지역보험도 월 60,986원씩 납부하였지만 보험급여비로 약 3% 많은 63,014원씩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이 지역보다 평균 급여비가 20% 많은 원인은 노인인구(노인구성비 직장 7.7%, 지역 6.2%)가 많고, 부양가족(피부양자 직장 1.9명, 지역 1.7명)이 많고, 의료이용(연간 직장 13.8회, 지역 12.5회)이 많기 때문임. 이 때문에 직장대상자가 지역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많은 급여를 받은 셈임.
- 건강보험 대상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638만명이었으며, 직장대상자(2317만명)와 지역대상자(2321만명)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세대) 수는 지역이 856만명으로 직장(789만명)보다 약 67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등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민원서비스 7월부터 개시

지금까지 각기 별도로 운영되어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주축으로 하여 4대 사회보험 관련 5개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동안 가입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던 국민연금등 4대 사회보험의 업무처리가 금년 7월부터는 가입자 위주의 업무처리로 전환된다. 신고인이 1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4대 사회보험의 자격신고 관련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이며 4개 공단의 업무를 한자리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고 고객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진일보한 민원시스템

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안내, 민원안내, 전자민원신청, 맞춤서비스, 부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보험안내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기관에 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음.
- 민원안내를 통해서서는 가입, 탈퇴, 자격변동, 보험료 인터넷 납부, 급여신청 등에 관하여 정보가 안내되어 있음.
- 전자민원신청에서는 가입, 탈퇴, 자격변동, 보험료 인터넷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음.
- 맞춤서비스에서는 개인의 실상황에 맞게 향후 받게될 예상연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인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함.
- 부가서비스에서는 공개자료실과 알림마당, 정보마당을 둬, 공개자료실에서는 서식자료와 관련법령자료, 통계자료, 관련사이트링크가 가능하고, 알림마당에서는 보험 새소식, 공단 공지사항이 있으며, 정보마당에서는 국민생활정보와 보건 및 복지정보, 안전관리 정보, 경제활동정보, 요양기관 주소조회를 할 수 있음.

##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02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대상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재산조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사수준에 맞추어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재산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3~4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의 140%(5천만원)를 가구별로 합산한 금액 이하”로 조정됨.
-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및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산가액은 시가기준으로 산정하며,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재산조사를 면제함.

- 경로연금은 1998년 시행이후 매년 예산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은 복잡한 재산조사로 인하여 신청을 꺼리고 일선 전문요원들은 업무과중 때문에 적극적인 발굴노력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민간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단은 전국 50개 지역 2,008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탈락자, 71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초기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 주요 평가결과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수의 대폭 확대, 급여수준의 향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소득·재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 제도의 효율성·형평성이 강화되었고,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활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확충으로 인한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83,000명을 과거의 취업사업에서 벗어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턴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자활프로그램에 근로능력 등에 맞게 단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 개선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및 재산의 이원적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

합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영자·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이 우려됨.

-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 및 여건의 불비로 자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 미흡
- 읍·면·동의 총정원제 관리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자활전담조직 설치 미흡으로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곤란
- 보건복지부내 자활전담과 미설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

## 2002년도 4인가족 생계비 최고 87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기준을 3.5%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을 확정,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및 주거비는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작년의 84만 2천원에서 2만 9천원이 오른 87만 1천원으로 인상 지급됨.
-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작년 96만원에서 3만원이 오른 9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기준은 작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하여 3~4인가구의 경우 작년의 3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음.
- 이와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

정시 실제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하여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가정해체 방지를 위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대기족 형태의 생활여건을 유지하면서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개인단위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의료비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아의 경우는 매년 10여 명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2002년부터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 현재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4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입양의사가 있어도 입양을 꺼리고 있음.
- 또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정상아를 입양하였으나 추후 장애 또는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의료비가 입양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번 양육비와 의료비의 인상지원은 이미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정상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장애아 입양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만 5세아 무상보육 소득·재산기준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전국으로 대폭 확대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확정하였다.

- 가구별 소득·재산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만원/4600만원 이하, 4인가구는 160만원/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180만원/5400만원 이하가 해당됨. 이는 작년의 4인가구 기준 105만원/37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것임.

- 이로써 전국의 보육시설이용 만 5세아 총 20만 6천명 중 약 42%인 8만 7천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에는 농어촌 저소득가구 1만 5천명에게 지원된 바 있음.
- 지원대상 아동은 2002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해당하는 1996년 3월 1일생부터 1997년 2월 28일생까지의 취학전 아동이며, 보육료는 3월부터 보육시설로 지원하게 됨.

## 재해구호법시행령 개정 추진

재해구호법이 1962년 3월 20일 제정 이후 40여 년만에 전문 개정되어 그 동안 보완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재해구호기관 확대,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재해의연금 배분 기준 법령화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으며, 현재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인 재해구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의 성금인 의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로 한정하고, 의연품종 재해구호와 관련이 없는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바자회를 개최하여 매매후 대금을 의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하는 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